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84
----------	-----

2025. 10. 13.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30. 윤석민 의원 등 18인

나. 상정의결

-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0. 13.)

“원안가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 대표발의자 윤석민 의원)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을 통해 양 의회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의정·경제·문화·민간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두 지자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초의회 간 친선결연 체결
- 친선결연 협약서(안)

4. 제안경위 및 추진사항

- 2025. 7. 17 : 진도군 의회 친선교류 추진 간담회 참석

○ 2025. 7. 18 : 진도군 문화 시설 시찰

○ 2025. 9. 23 : 강남구 의회 친선교류 추진 간담회 개최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서용)

가. 결의안 제안 취지

-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을 통해 의정·경제·문화·민간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윤석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임.

나. 검토내용

- 진도군의회의 의원 정수는 7명(의장 박금례)이며 의장단과 운영위원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농수산건설위원, 특별위원회로 구성됨.
사무 조직으로 의회사무과장 아래 16명의 인원을 전문위원, 의사팀과 의정팀으로 두고 있음.

【진도군 기본현황】

- 행정구역 : 1읍 6면 2출장소 242개 마을 713개 반
- 도서수 : 247개(유인 43, 무인 204)
- 면적 : 440.11km²(전남의 3.6%, 전국 0.4%)
- 인구 : 28,979명(남 14,453/ 여 14,526), 16,548세대(2023.12.31.현재¹⁾)
- 재정규모 : 일반회계 4,122억원, 특별회계 97억원(2024.1.1.기준)

1) 진도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음

- 2024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강남구의회와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동 조례에 따르면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을 맺기 위해서는 ‘인구, 면적,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산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등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따로붙임 1. 관련 법령 및 조례]**
- 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국 행정지원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의회는 진도군의 농어업 상품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협력이 가능하며, 진도군의회는 진도 지역 유망 관광지를 강남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따로붙임 2. 강남구의회-진도군의회 친선결연 체결 검토자료]

- 하지만 상호 보완성 및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구체성이 부족하고, 강남구의회는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실제 사업으로서 진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방안을 추진할 수 있지만, 진도군의회에서 강남구 또는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한 교류 협력을 통한 구체적인 실익에 대한 부분은 검토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음.

이는 기준 항목인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부분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검토자료 작성에 있어서 강남구의회 의정관리 시스템과 예산 효율화 경험을 진도군의회에 비해 우위로 단정하는 듯한 표현은 적절치 않아 검토자료 작성에 있어 주의를 요구한다고 할 것임.

다. 종합의견

-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와의 친선결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풍부한 도시인프라를 갖춘 강남구와 강남구 면적의 약 11배에 이르는 농수산업·관광 중심의 진도군이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지방의회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견인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두 의회 간의 친선결연이 제안 취지에서 밝히고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 증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이며, 의회사무국에서 주도적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교류계획을 수립하고, 상호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점검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따로붙임 1. 관련 법령 및 조례]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사전검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 면적,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
5.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5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등”이라 한다)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의장은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교환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따로붙임 2. 강남구의회-진도군의회 친선결연 체결 검토자료]

강남구의회 - 진도군의회 친선결연 체결 사전 검토 자료

1. 검토배경

- 강남구의회는 전라남도 진도군의회와의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체결 제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국내 지방의회 간 상호 교류를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며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 사례 공유와 창의적인 의정 활동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 자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교류 협력을 제안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친선결연 대상 : 전라남도 진도군 의회
- 협약 내용
 - 양 기초 의회간 우호 증진 및 상호 협력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 양 기초 의회의 행정·경제·산업·문화예술 등 다방면에 걸친 지속가능한 교류를 통해 상생발전 도모
- 일반 현황(※2025년 기준)

구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전라남도 진도군 의회
의정 구호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 구민에게 힘이되는 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면적	39.50 km^2	440.11 km^2
인구	556,492명	28,979명
재정규모	1조3,736억	4,219억원
의원정수	23명	7명

4. 사전 검토 분석

○ 기준 항목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

연 번	기 준 항 목	검 토 내 용
1	인구, 면적,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강남구는 대도시형 지역이고, 진도군은 농어촌형 지역으로 지역적·행정적·재정적 차이가 큼. 면적은 진도군이 더 넓으나, 인구 및 재정 규모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지역 여건의 차이에 기인하여 양의회는 강남구의 도심 지역 사례 및 진도군의 농어촌 지역 정책 방안 등과 같은 지역 특성 논의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의정 활동 교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음.
2	산업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강남구는 도시 중심의 산업·경제 구조를 보유하며 IT, 금융, 서비스업 등이 주요 산업 구조인 지역이며, 진도군 농어업 중심의 산업 구조이며, 전통 문화와 예술자산(민속문화, 판소리 등)이 풍부함. 강남구의회는 진도군의 농어업 상품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및 협력 가능하며, 진도군 의회는 진도 지역 유망 관광지(바닷길, 판소리 등)를 강남구민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관광 자원 활성화 가능. 결과적으로 강남구의 도시 자원과 진도군의 전통 문화·농수산업 자원 간 협력을 통해 의정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됨.
3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진도군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지만 특화된 전통 문화와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강남구는 재정적·행정적 경험과 도심지 자원을 보유하여 두 지역이 상이한 특성을 지닌 만큼 상호 윈윈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자의 핵심 역량을 활용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교류 가능성이 있음.
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	교류협력을 통해 강남구의회는 정책적으로 농어촌 지역 경제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강남구의회 내 도시-농촌 협력 프로젝트 추진에 활용 할 수 있으며, 농촌 자원 활용을 통한 도시 관광 정책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의정 아이디어도 도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진도군의회 측은 정책적으로 강남구의회와 발전된 의정관리 시스템과 예산 효율화 경험을 공유받아 진도군 의회의 의정 역량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진도군은 한반도 남서단에 위치, 역사적으로 왜구 침입 방어지와 같은 군사적, 역사적 의미가 크며, 천연 해양 자원과 전통 문화(전남 민속문화의 중심지, 판소리 등)가 풍부함. 강남구는 대한민국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현대적 도시문화와 인프라가 발달함. 양 지역은 지리적 거리감이 있지만, 역사적·문화적 특성이 상이하 여 이를 통한 교류 효과가 기대됨.
6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친선교류를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협력 모형(문화 축제 교류, 농수산물 홍보 등)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도시 의회와 농촌 의회 간 협력은 교류협력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생산적인 상생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음.

5. 사전 교류 현황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
- ① -1 사전교류를 통한 상호 교류여건 조성(진도군 의회 방문)
 - 일 시 : 2025. 7. 17.(목)
 - 장 소 : 전라남도 진도군 의회
 - 참석자 : 강남구의회 의원 및 진도군 의회 의원



진도군의회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양 의회간 우수한 의정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을 논의함.

- ① -2 사전교류를 통한 상호 교류여건 조성(강남구 의회 방문)
 - 일 시 : 2025. 9. 23.(화)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
 - 참석자 : 강남구의회 의원 및 진도군의회 의원



진도군의회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및 홍보 부스 연계와 예술·축제·공연 등 상호 홍보 및 관광자원 활성화 지원하고 도농 지역 간 상생 관계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함.

- ②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교환



친선결연에 앞서 지역 여건을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교환을 통하여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함.

6.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진도군의회의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7. 향후 계획

- 사전교류 실무협의(교류·협력 분야 및 친선결연 체결 일정 등)
- 강남구 의회-진도군 의회 친선결연 체결(의안 통과 후 예정)

8. 종합 의견

- 강남구의회의와 진도군의회의의 친선결연은 도시와 농촌의 상호 이해와 보완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양 지역은 산업·문화·자원 측면에서 상호보완성이 높아 다양한 정책·행정 교류가 가능함.
특히 강남구의 도시 자원 및 재정·행정 역량과 진도군의 전통문화·농수산 자원의 결합을 통해 관광, 특산물 유통, 주민 교류 등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 장기적·지속적 협력관계 구축에 타당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1.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 끝.